



: 2018-02-13

## 수 원 지 방 법 원

### 제 5 행정 부

### 판 결

사 건 2017구합60704 제재결정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유비링크 주식회사  
피 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변 론 종 결 2018. 1. 9.  
판 결 선 고 2018. 1. 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및 제재처분(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및 도 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과 정책의 연구·발굴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017. 1. 6. 해산되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2016. 9. 29.)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법률관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3. 피고(해산되기 전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을 지칭한다, 이하 '피고'로 통칭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협약

- 과제명: 「재난(화재)시 전용단말기 또는 휴대폰 화면에 피난방향표시 및 긴급피난경로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 개발기간: 2014. 10. 1.~2015. 9. 30.
- 주관기관: 원고
- 전담기관: 피고
- 제11조(협약과 제 규정 등의 준수 및 제재조치) 제2항: 피고는 원고 등 사업수행기관이 제2조의 제반규정 또는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과제수행의 불성실 등으로 중단 또는 실패를 한 경우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국가 등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조치, 기타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제의 수행실적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보완"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보완기간: 3개월)하였다.

■ 평가 의견



- 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과제 결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한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유도등에 대한 형식승인 제시가 필요함
- 목표달성도 평가항목들에 대한 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과평가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내에 형식승인을 받아 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이 타당함
- 유도등의 동영상 팩토그램 적용이 된다면 서울 매트로, 서울 도시철도공사, 롯데백화점 및 호텔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

라. 원고는 이에 2016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과제의 보완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완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과제(보완)의 최종평가(재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실패(불성실)"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도지원금 6,000만 원의 환수 및 6년간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결정을 통보하였다. 위 통보서에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 평가 의견

##### ○ 목표달성도

- ▶ 재평가에서도 소방방재청 기기 시험을 위한 형식 승인 진행을 아직도 수행하지 못하여 총괄 책임자가 연구개발 지연 및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됨
- ▶ 스마트 피난유도등, 스마트 재난안전 서비스 서버, 서비스 단말 앱 개발부분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 확인이 되어야 하나, 제품 형식승인이 되지 않았으며, 시험인증 평가에 대한 결과의 오류 발생 등이 있어서 정량적 목표달성이 미흡함
- ▶ 사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제품 개발 형식 승인이 되지 않아 제품 생산, 판매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
- ▶ 추가로 제출한 형식 승인 신청서 내용에서 단면 부품 배치도/패턴 도면도 설계일자가 2009. 4. 17.로 되어 있고, 유도등 회로도도 2010. 12. 27.로 오래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신뢰성이 부족하여, 자체 개발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 향후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화 계획의 달성여부도 매우 불확실함

##### ○ 기술성

- ▶ 기술적인 항목의 진동시험, 충격시험, 습도시험, 전원시험 자동전환 장치 등의 작동시험, 저온에서의 점등시험, 충전 시험을 향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신뢰성이 부족함
- ▶ 감지기 감지 전환 소프트웨어 개발(협력업체)지원 하였으며, 한성대학에서 SW부문에 대한 승인 검증하였으나, 시험인증 결과 평가보고서의 경우 데이터 시트 자료 오류(패스/오류: 8:2가 표기



**에는 9:1) 등 자료의 신뢰성 미흡**

- ▶ 유도등 회로개발(파워보드 개발, 미디어 보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회로도 작성연도 (09년) 등이 사업 기간과 상이함

○ 사업성

- ▶ **제품 형식승인이 되지 않아서** 제품 생산 및 판로개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 금형설계 공정에 60여일, 형식승인 50일 소요되어 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주어진 일정에 개발되지 못하였고, 향후계획(생산, 판매, 고용창출 등) 달성에도 영향을 미침
- ▶ 제품 생산(1천대 예상)은 자체 생산 계획 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 조달 문제 등이 산재되어 있음**
- ▶ 향후 사업성을 위한 준비는 소방방재청의 형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성의 판단이 어려움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2016. 9. 7.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4. 위 2016. 3. 18.자 제재결정 중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 6년간 제한 중 3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2016. 3. 18.자 제재결정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및 도 지원금 환수통보를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운영요령 제38조 등인데, 위 규정 등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원고가 불성실하게 이 사건 과제를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비를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삭감하여 인력을 감축하였음에도 계획된 기간 내에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점, 참여기관인 나우테스테크놀러지는 이 사건 사업의 정량적 목표 달성에 관한 증빙자료를, 위탁기관인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최종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의 평가위원들도 현장실사를 통해 이 사건 과제의 목표가 달성되어 완벽히 시현됨을 확인한 점, 이 사건 과제는 '상용케이스'(갑 제5호증의1 45, 46면 참조)를 전제로 하였으나, 한국소방기술원이 '전용케이스'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형식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 점, 2016년 3월경 최종보고서의 형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재평가위원들은 원고의 구두설명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2015. 9. 30. 최종보고서상의 회로도 및 설계도면은 이 사건 과제 수행기간 내에 작성된 것인 점, 1차 테스트 데이터 시트 중 합계 값이 8:2로 되어 있으나 시트상에는 9:1의 형태로 표기된 부분(갑 제5호증의1 82면 참조)은 단순 오기에 불과하며, 회로도 작성 연도가 사업기간과 상이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자료일 뿐인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제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불성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다. 판단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도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운영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범적 성격은 경기도와 피고의 내부업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요령 제38조는 구체적인 법령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서 운영요령 제38조를 관련규정으로 거시하면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도 지원금을 환수함을 명시하였는데, 앞서 본 운영요령 제38조의 규범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위 통보는 결국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행해진 공법상 계약에 기한 의사



의 표명임이 분명하고, 이를 달리 처분으로 보아야 할 법리적 근거는 없는 점, ④ 또한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원고가 도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강제징수 절차에 의한 환수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⑤ 피고도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도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 법령상 근거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운영요령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를 일정기간 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 지원금을 환수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뜻의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통보의 효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가 자격의 유무 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이 사건 통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  
.  
: 2018-02-13

판사           곽태현

판사           문중흠





[별지]

## 관계 법령

###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 등과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3.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4. 지역 전략·특화기술개발 지원 사업
5.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6. 기업주도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개발기관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혁신·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2.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및 수요조사
3. 기술개발사업의 수행·평가·관리·성과분석 등
4. 기술료의 징수 및 집행·관리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혁신·지원기관 또는 도 출연(출자)기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 9. 29. 경기도 조례 제5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의 연구·발굴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하 “과기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① 과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의 수립
2.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기술 수요조사
3.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개발 지원



4.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5. 연구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6. 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정책 포함)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분석·평가 (나노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진테크노파크 등 도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7.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성과 확산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과학·산업기술에 관한 협력·교류·정보지원 (국제 과학기술협력 및 교류 사업을 포함한다.)
10. 의료·바이오·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11. 그 밖의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1조(업무의 위탁)

-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과기원에 과학기술진흥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전담기관)

- ① 도지사는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평가·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20조(협약의 체결)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장과 기술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 제27조(최종평가)

-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항의 최종보고에 대하여 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제38조(제재 및 지원금의 환수·관리)

-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제재 또는 도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 및 환수에 대한 조치는 전담기



관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4. 제26조 및 제27조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실패로 결정된 경우

[별표 1]

제재 및 도 지원금의 환수 기군(제38조 관련)

1) 협약포기, 중단, 실패,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분류 등급	제재사유	도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구분	대상
2등급	⑩ 기술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전액	3년	귀책대상 기관/대표자/총괄 책임자

끝.